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군예식령 일부개정법률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안규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예식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합참의장보다 상위 서열인 장관 다음으로 상향 조정하여 장관 유고시 군을 지휘 및 감독하기 위한 직무의 권한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추진함.

3. 주요내용

가.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 상향조정(별표 1)

- 1)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방부차관은 장관 부재 시 직무대행으로서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·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군을 지휘 및 감독하는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이 대장보다 낮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.
- 2) 책임과 권한에 부합되도록 의장행사 시 국방부차관의 예포수를 장관급인 19발로 상향 조정하고, 의전서열을 합참의장보다 상위 서열로 조정함.
- 3) 국군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군예식령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, 실질적으로 군 예식을 주관 및 수례하지 않는 타 정부부처 차관은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삭제 필요.
- 4)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차관의 서열을 조정함에 따라 장

관 유고시 직무대행으로서 원활하게 군을 지휘 및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본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결과 추후 확인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추후 확인예정

법률 제 호

군예식령 일부개정법률안

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예 우 표

수 례 자	예포발사수		경례곡연주		의장대의 편성기준
	도착시	출발시	관 악	예 악	
대통령	21	21	4	국가 또는 대통령에 대한 경례곡(봉황)	1개대대(합동의장대의 경우에는 각 군 1개중대)
전직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자	21	21	4	행진곡(무궁화)	
외국원수	21	21		해당국 국가	
외국부통령	19			해당국 국가	
국회의장	19		4	행진곡(무궁화)	1개 중대(합동의장대의 경우에는 각 군 1개 소대)
대법원장	19		4	행진곡(무궁화)	
국무총리	19		4	행진곡(무궁화)	
특명전권대사 및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외교사절	19			해당국 국가	
외국각료	19			해당국 국가	
국방부장관	19	19	4	행진곡(무궁화)	
국무위원	19		4	행진곡(무궁화)	
국회상임위원회위원장	19		4	행진곡(무궁화)	
국방부차관	19	19	4	행진곡(무궁화)	
합동참모의장	19	19	4	장성행진곡	
육·해·공군참모총장	19	19	4	장성행진곡	1개소대(합동의장대의 경우에는 각 군 1개 분대)
원 수	19	19	4	장성행진곡	
대 장	19	19	4	장성행진곡	
중 장	17		3	장성행진곡	
특명전권공사	15		3	행진곡(무궁화)	
소 장	15		2	장성행진곡	
준 장	13		1	장성행진곡	

대리대사 총영사	11 11		1 1	행진곡(무궁화) 행진곡(무궁화)	
기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한 자	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 총장이 정한 다.		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.		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.
(참고)	외국인 수레자 에 대한 예포 발사수는 해당 국가의 예포발 사수를 참작하 여 조정할 수 있다.		1. 대통령에 대한 경례 시에 나팔대만 있을 경우에는 국기에 대 한 경례곡을 연주한 다. 2. 대통령에 대한 경례 시 예포 발사가 없는 행 사의 경우에는 관악을 생략하고 예약만 연주 할 수 있다. 3. 의장례에 계속하여 다른 의식이 거행될 경우에 동의식 식순 에 국가가 있을 때의 대통령에 대한 경례 곡은 봉황곡을 연주 한다. 4. 외국인 수레자에 대 한 국가의 연주여부 는 해당국의 규정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.		1. 위의 기준은 장성 급 장교가 지휘하 는 부대에 해당되 며 의장대에는 기 본 편성외에 기단, 군악대 또는 나팔 대를 붙인다. 2. 위의 기준은 부대 사정에 따라 적 절히 증감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병영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161